



2020. 3. 15. SUN



법원행정처

# 목 차

## contents

규칙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477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480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482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485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487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489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491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12
예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515
신법령 목록		517
인사		529
공지사항		622

## 규칙

---

###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82호 2020. 3. 4. 공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연번	기관	구성원	법원별 총원
1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제외), 특허법원		2
2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제외)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3
3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3
4	서울고등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4
5	수원지방법원	각 2명	6
6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3명	9
7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제외)		1
8	지원 중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판사회의가 설치된 지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1
9	대법원	법관인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2명	2
10	사법연수원	법관 교수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1
11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1

- 비고 : 1. 각 지방법원은 관내에 판사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지원이 있는 경우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지원 소속 판사들도 참여하는 관내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내부판사회의”라 함은 고등법원, 특허법원에서는 ‘고등부장판사회의’와 ‘고법판사·고법배석판사회의’를 말하고,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를 말한다.
3. 단, 제2항에 따른 내부판사회의의 인원 구성에 불균형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 1의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 각 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원별로 부여된 대표자 총원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내부판사회의의 종류와 수 및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

기관	구성원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제외), 특허법원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제외)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각 내부관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각 내부관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내부관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3명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제외) 지원 중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판사회의가 설치된 지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대법원	법관인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된 회의 에서 선출된 대표자 2명
사법연수원	법관 교수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 된 대표자 1명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 비고: 1. 각 지방법원은 관내에 판사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지원이 있는 경우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지원 소속 판사들도 참여하는 관내 내부관사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내부관사회의"라 함은 고등법원, 특허법원에서는 '고등부장판사회의'와 '고법판사·고법배석판사회의'를 말하고,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를 말한다.

[별표 1]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

연번	기관	구성원	법원 별 총원
1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제외), 특허법원	각 내부관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2
2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제외)		3
3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3
4	서울고등법원	각 내부관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2명	4
5	수원지방법원		6
6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내부관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3명	9
7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제외)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1
8	지원 중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판사회의가 설치된 지원		1
9	대법원	법관인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2명	2
10	사법연수원	법관 교수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1
11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1

- 비고: 1. 각 지방법원은 관내에 판사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지원이 있는 경우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지원 소속 판사들도 참여하는 관내 내부관사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내부관사회의"라 함은 고등법원, 특허법원에서는 '고등부장판사회의'와 '고법판사·고법배석판사회의'를 말하고,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를 말한다.  
3. 단, 제2항에 따른 내부관사회의의 인원 구성에 불균형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 1의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 각 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원별로 부여된 대표자 총원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내부관사회의의 종류와 수 및 각 내부관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83호 2020. 3. 4. 공포)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별표 1]

**법관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직명	호봉	봉급액
대법원장		11,904,300
대법관		8,431,600
일반법관	17호	8,419,300
	16호	8,403,100
	15호	7,926,400
	14호	7,452,000
	13호	7,026,400
	12호	6,667,300
	11호	6,494,100
	10호	6,290,400
	9호	5,950,000
	8호	5,544,400
	7호	5,194,700
	6호	4,866,500
	5호	4,549,800
	4호	4,230,900
	3호	3,922,700
	2호	3,615,300
	1호	3,208,600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84호 2020. 3. 4.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배우자”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로, “인건비가”를 “인건비가 지급되거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10조의2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법관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frac{5}{\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근무시간} - 5}{\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11조의2 본문 중 “13만원”을 “14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가족수당) ① ~ ④ (생 략)</p> <p>⑤ 부부 중 1명은 법관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법관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u>아니한다</u>.</p> <p>〈신 설〉</p> <p>2. ~ 5. (생 략)</p> <p>⑥ ~ ⑪ (생 략)</p>	<p>제9조(가족수당)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p> <p>-----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p> <p>----- 않는다.</p> <p>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p> <p>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⑥ ~ ⑪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 ④ (생 략)</p> <p>⑤ 육아휴직 대상 법관이 육아휴직을 대신 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p>	<p>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법관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p>

$$\frac{\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times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frac{\text{(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5} \times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frac{\text{(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근무시간} - 5} \times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⑥ ~ ⑧ (생략)

제11조의2(정액급식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국외파견되어 제5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정액급식비) -----  
 ----- 14만원 -----  
 -----  
 -----  
 -----  
 -----  
 ----- 않는다.

●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85호 2020. 3. 4. 공포)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2,022,100원”을 “2,078,7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p> <p>1. (생략)</p> <p>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u>2,022,100원</u></p> <p>3. (생략)</p>	<p>제2조(보수의 기준) -----</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u>2,078,700원</u></p> <p>3. (현행과 같음)</p>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86호 2020. 3. 4. 공포)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차량의 교체)</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p> <p>1. 2. (생략)</p> <p>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p> <p>4. (생략) &lt;신설&gt;</p>	<p>제4조(차량의 교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 -----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p> <p>4. (현행과 같음)</p> <p>5. 최초 등록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p>

###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87호 2020. 3. 4. 공포)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탁 관련 업무원가”를 “포괄이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 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위원회는 자금운용수익률, 순이자마진율을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각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p> <p>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 관은행 별로 전년도에 공탁금 운 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 과 공탁 관련 업무원가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 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② 위원회는 회계법인 등의 의견과 각 보관 은행의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출연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③ (생 략)</p>	<p>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p> <p>① ----- ----- --포괄이윤 ----- ----- ----- .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 연금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p> <p>②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 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 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 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p> <p>③ 위원회는 자금운용수익률, 순이자마진율을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각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 우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p> <p>④ (중전의 제3항과 같음)</p>

###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88호 2020. 3. 4.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단체”를 각각 “법인·단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직무관련자 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 2. 정무직 법원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대법원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른 공무원”을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공직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

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제4조 제1항 본문의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 등 미리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사실을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수익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p> <p>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관련자”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p> <p>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u>단체</u></p> <p>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u>단체</u></p> <p>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u>단체</u></p> <p>라. 법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u>단체</u></p> <p>2. ~ 5. (생략)</p> <p>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p> <p>① <u>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u></p>	<p>제2조(정의)</p> <p>----- -----.</p> <p>1. ----- ----- ----- -----<u>법인·단체</u>----- ----- -----.</p> <p>가. ----- ----- ----- -----<u>법인·단체</u>-----</p> <p>나. ----- ----- ----- -----<u>법인·단체</u>-----</p> <p>다. ----- ----- ----- -----<u>법인·단체</u>-----</p> <p>라. ----- -----<u>법인·단체</u>-----</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p> <p>① <u>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p>

## 현행

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신설〉

〈신설〉

## 개정안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일정 비

현 행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의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정 안

을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현행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개정안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4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

현행

개정안

<신설>

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 2. 정무직 법원공무원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

## 현행

## 개정안

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대법원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

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소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0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② -----

## 현행

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신설〉

## 개정안

공직자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 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제4조 제1항 본문의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 현행

## 개정안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설〉

**제1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현행

개정안

제15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

## 현행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안

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 4.(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 등 미리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사실을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  
-----  
-----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 4.(현행과 같음)

◎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89호 2020. 3. 4. 공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법원별 직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판사	계
<b>합계</b>	7	28	139	41	1085	97	265	1552	3214
대법원			2			97			99
서울고등법원	1		75				133		209
대전고등법원	1		10				22		33
대구고등법원	1		8				17		26
부산고등법원	1		14				30		45
광주고등법원	1		10				25		36
수원고등법원	1		13				26		40
특허법원	1		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1	1		156			223	381
서울가정법원		1			12			35	48
서울행정법원		1			12			37	50
서울회생법원		1			5			33	39
서울동부지방법원		1			32			48	81
서울남부지방법원		1			41			61	103
서울북부지방법원		1			30			51	82
서울서부지방법원		1			30			43	74
의정부지방법원		1			32			69	102
고양지원				1	12			27	40
인천지방법원		1			41			95	137
인천가정법원		1			5			10	16
부천지원				1	10			24	35
수원지방법원		1			54			124	179
수원가정법원		1			5			10	16
성남지원				1	14			33	48
여주지원				1	4			9	14
평택지원				1	8			12	21
안산지원				1	12			29	42
안양지원				1	9			18	28
춘천지방법원		1			15			15	31
강릉지원				1	9			9	19
원주지원				1	6			7	14
속초지원				1	1			4	6
영월지원				1	1			6	8
대전지방법원		1			46			47	94
대전가정법원		1			3			6	10
홍성지원				1	6			6	13
공주지원				1	1			4	6

법원별 직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판사	계
논산지원				1	1			4	6
서산지원				1	6			7	14
천안지원				1	16			11	28
청주지방법원		1			29			23	53
충주지원				1	4			6	11
제천지원				1	1			5	7
영동지원				1				3	4
대구지방법원		1			57			48	106
대구가정법원		1			6			6	13
서부지원				1	14			11	26
안동지원				1	3			5	9
경주지원				1	5			5	11
포항지원				1	8			5	14
김천지원				1	7			6	14
상주지원				1	1			4	6
의성지원				1				3	4
영덕지원				1				3	4
부산지방법원		1			57			48	106
부산가정법원		1			8			6	15
동부지원				1	16			13	30
서부지원				1	11			11	23
울산지방법원		1			29			24	54
울산가정법원		1			2			4	7
창원지방법원		1			37			40	78
마산지원				1	9			6	16
진주지원				1	8			10	19
통영지원				1	8			9	18
밀양지원				1	1			4	6
거창지원				1				3	4
광주지방법원		1			48			42	91
광주가정법원		1			3			5	9
목포지원				1	8			6	15
장흥지원				1				3	4
순천지원				1	11			12	24
해남지원				1	1			4	6
전주지방법원		1			27			21	49
군산지원				1	9			8	18
정읍지원				1	2			7	10
남원지원				1				3	4
제주지방법원		1			20			13	34

## 예규

---

### ●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18호 2020. 2. 28. 결재)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 개시 전까지,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형	개정안
<p>제4조 (신청 및 승인)</p> <p>① (생략)</p> <p><u>〈신청서〉</u></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4조 (신청 및 승인)</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 개시 전까지,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u></p> <p>③ (중전의 제2항과 같음)</p> <p>④ (중전의 제3항과 같음)</p>

# 신법령 목록

(2020. 2. 16. ~ 2. 29.)

## 법률

법률제17006호	밀향단속법 일부개정법률	19691	2020. 2.18.	5
법률제17007호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	5
법률제1700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39
법률제17009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	41
법률제1701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1
법률제1701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17012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1701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3
법률제17014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46
법률제1701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6
법률제17016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8
법률제17017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49
법률제17018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51
법률제17019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17020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1702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0

법률제17022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19691	2020. 2.18.	64
법률제17023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	"	64
법률제1702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65
법률제17025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	"	67
법률제1702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8
법률제17027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	"	72
법률제17028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73
법률제17029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	"	76
법률제17030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	"	79
법률제17031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80
법률제17032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	"	82
법률제17033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85
법률제17034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6
법률제17035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87
법률제1703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87
법률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94
법률제17038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	"	119
법률제17039호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121
법률제17040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	128
법률제17041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30
법률제17042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	"	131
법률제1704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132
법률제17044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34
법률제17045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34

법률제17046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9691	2020. 2.18.	135
법률제17047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6
법률제17048호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36
법률제1704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8
법률제17050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	139
법률제1705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	"	140
법률제17052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141
법률제17053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4
법률제17054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145
법률제17055호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145
법률제17056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147
법률제17057호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	"	"	149
법률제17058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149
법률제1705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9
법률제17060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60
법률제1706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0
법률제1706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5
법률제17063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	166
법률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194
법률제17065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	"	208
법률제1706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	"	210

————— ◀ 조약 ▶ —————

조약제2455호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19695	2020. 2.24.	4
----------	---	-------	-------------	---

————— ▶ 대통령령 ◀ —————

대통령령제30412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691	2020. 2.18.	211
대통령령제30413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2
대통령령제30414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3
대통령령제3041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4
대통령령제30416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5
대통령령제30417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6
대통령령제30418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5
대통령령제30419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7
대통령령제30420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1
대통령령제3042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2
대통령령제30422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9
대통령령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0
대통령령제3042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7
대통령령제3042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8
대통령령제3042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2

대통령령제304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691	2020. 2.18.	265
대통령령제30428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7
대통령령제30429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8
대통령령제3043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0
대통령령제3043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3
대통령령제30432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4
대통령령제30433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9
대통령령제3043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2
대통령령제30435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3
대통령령제3043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4
대통령령제30437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6
대통령령제3043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694	2020. 2.21.	5
대통령령제3043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696	2020. 2.25.	6
대통령령제3044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04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0442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0443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0444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30445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0446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3044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3044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0449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3045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9696	2020. 2.25.	23
대통령령제304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3045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3045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3045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30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3045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3045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304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3045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3046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3046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제3046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제3046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3
대통령령제30464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3046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3046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제3046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7
대통령령제3046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9
대통령령제3046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3047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30471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52
대통령령제3047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30473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30474호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19696	2020. 2.25.	66
대통령령제3047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1
대통령령제30476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30477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3
대통령령제30478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30479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1
대통령령제30480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2
대통령령제30481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5
대통령령제30482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	"	87
대통령령제3048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3
대통령령제3048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6
대통령령제3048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8
대통령령제3048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9
대통령령제30487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	"	110
대통령령제30488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0
대통령령제30489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2
대통령령제30490호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3
대통령령제3049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5
대통령령제3049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6
대통령령제30493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123
대통령령제30309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정정	19697	2020. 2.26.	3
대통령령제3049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699	2020. 2.28.	5
대통령령제30495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	"	"	7

## 총리령

총리령제159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0	2020. 2.17.	3
총리령제159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6	2020. 2.25.	124
총리령제159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5
총리령제159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6
총리령제159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8	2020. 2.27.	4
총리령제159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9	2020. 2.28.	8

##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2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0	2020. 2.17.	3
국방부령제101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1	2020. 2.18.	298
법무부령제967호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	19693	2020. 2.20.	4
행정안전부령제159호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	"	4
행정안전부령제160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환경부령제8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해양수산부령제388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4	2020. 2.21.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1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	"	11
법무부령제96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행정안전부령제161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6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4	2020. 2.21.	18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3
국토교통부령제68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6
국토교통부령제690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5
국토교통부령제691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7
국토교통부령제69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8
해양수산부령제389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4
해양수산부령제390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2
중소벤처기업부령제2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1
중소벤처기업부령제2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3
환경부령제850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5	2020. 2.24.	43
환경부령제851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1
환경부령제852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3
기획재정부령제76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6	2020. 2.25.	129
기획재정부령제76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2
기획재정부령제76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6
교육부령제19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8
외교부령제7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9
외교부령제76호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42

통일부령제10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6	2020. 2.25.	143
법무부령제96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4
국방부령제101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0
국방부령제10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4
행정안전부령제16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5
행정안전부령제16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6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1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3
농림축산식품부령제41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4
농림축산식품부령제41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6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3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1
보건복지부령제70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3
보건복지부령제71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9
환경부령제85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0
국토교통부령제6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1
해양수산부령제39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3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7	2020. 2.26.	3

환경부령제85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7	2020. 2.26.	4
해양수산부령제392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교육부령제200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8	2020. 2.27.	7
국토교통부령제69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교육부령제20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9	2020. 2.28.	9
교육부령제20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교육부령제20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행정안전부령제16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
농림축산식품부령제412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
보건복지부령제71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
보건복지부령제71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
국토교통부령제694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	"	44
국토교통부령제695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4
국토교통부령제697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7
국토교통부령제698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7
환경부령제855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7
국토교통부령제69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2
국토교통부령제70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57
국토교통부령제702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58

해양수산부령제39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99	2020. 2.28.	68
국방부령제100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83

# 인사

인사발령 법 제31호

2020. 2. 6.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b>1. 퇴 직</b>			
<b>가. 지방법원 부장판사</b>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남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전국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우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엄상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서현석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중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정지영	"
	"	조인영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양재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시진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	홍이표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승환	"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은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이한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전휴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정석중	”
”	조기열	”
”	진광철	”
”	허상진	”
부산고등법원 판사	심활섭	”

## 다.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	----------------------

## 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재억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현낙희	”

##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삼윤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한재상	”
인천지방법원 판사	조동은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섭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영훈	”
”	김정민	”
”	김창현	”
”	박연주	”
”	변민선	”
”	윤도근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정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법원행정처 공보관 겸임을 면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규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허명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주채광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예영	”
”	박희근	”
”	송승훈	”
”	양은상	”
”	이관형	”
”	이석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장 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정성완	”
”	차은경	”
”	황순현	”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최정인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성원	”
”	노태현	”
”	원정숙	”
”	이태웅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김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재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김정민	”
”	당우증	”
”	박석근	”
”	이정권	”
”	차영민	”
”	최창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태균	”
”	최창훈	”
”	허선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송혜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신현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춘수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김지숙	”
”	김형석	”
”	이현우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김선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맹현무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철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승원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염우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전안나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유환우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종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권순호	”
”	권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문혜정	”
”	박미리	”
”	박상구	”
”	신상렬	”
”	이근수	”
”	이일엽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상도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곤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업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	강병훈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강성수	”
”	김동진	”
”	김인택	”
”	김진철	”
”	박원규	”
”	변성환	”
”	성보기	”
”	송인권	”
”	조정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용호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
”	박성규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
”	이진웅	”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반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우중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양형권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정도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섭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김지철	”
”	김행순	”
”	이상윤	”
”	이 원	”
”	정문성	”
”	정 완	”
”	조미옥	”
”	진상범	”
”	허경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박지원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천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병태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이영훈	”
”	정계선	”
”	함석천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상준	”
”	이대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문병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김도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기획 심의관 겸임을 면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지호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훈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사법연수원 교수	김형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이흥권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이규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효두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에 포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김상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우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고연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김정숙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여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염원섭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기두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각엽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고은설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관근	”
”	김형작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에 포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장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김정아	”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미경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이명철	”
”	한원교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은성	”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함종식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휴옥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평균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태훈	”
”	하현국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일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민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에 포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원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육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영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에 포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정현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김세용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범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에 포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에 포함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조영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김순열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봉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두봉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이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진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송종선	”
인천지방법원 판사	진원두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청미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정수영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광주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복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권상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오성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에 포함.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영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박현행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부장판사)	나경선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성묵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정선오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길연	”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구창모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명희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희정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준	”
”	김호석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성기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주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향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에 포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선양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동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에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수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채대원	”
부산지방법원 판사	최재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송경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영 (金秀英, 700810)	”
”	이동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남성우	”
”	최유나	”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 룡	”
”	이수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제갈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에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안효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임창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준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정옥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백정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도	”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경희	”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영수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열	”
”	이영숙	”
”	정석원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천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권준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호철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낙형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균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김종혁	”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세영	”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우석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정우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정일	”
대구지방법원 판사	정한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순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병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한소희	”
울산가정법원 판사	우정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울산가정법원 판사	권순향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성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에 포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보승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에 포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상민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규현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한영표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윤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박형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흥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정성호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이재덕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심현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민석	”
”	홍준서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성은	”
”	심동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가정법원 판사	정현숙	”
”	주성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에 포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윤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행남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덕환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춘언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미선	”
”	정정호	”
서울가정법원 판사	황성광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은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유현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희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염경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진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	김태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은정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영범	”
”	임효량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익경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도훈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우철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형철	”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태홍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용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장철웅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운신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은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12. 31.까지 휴직을 명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예지희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	이용균	”
대법원 재판연구관	홍득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구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문선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경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양상익	”
”	하상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상범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종훈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곽희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에 포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권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욱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부장판사)	박재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사법연수원 교수	이재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일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에 포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문현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	민규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지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에 포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맹준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	김도형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에 포함
”	김정훈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전일호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평호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상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종근	”
”	김진만	”
”	김태호	”
”	송인경	”
”	이호산	”
”	정지선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용태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지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혜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노재호	”
”	박찬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효진	”
”	이혜림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흠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남해광	”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현미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김태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4.부터 2021. 2. 23.까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규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에 포함
사법연수원 교수	송백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재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이도행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을 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빈태욱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김상근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사법연수원 교수	최종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김연하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제주지방법원 판사)	남 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창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이의석	”
”	조지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우석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종문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고상교	”
대전지방법원 판사	나상훈	”
”	임성실	”
”	최형철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국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에 포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근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에 포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장찬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종철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병대	”
인천지방법원 판사	오창훈	”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	김경애	”
”	배정현	”
”	정문경	”
”	하태한	”
”	하태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장준아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웅영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양희	”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최한순	”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완희	”
대구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신종오	”

대구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이현우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최봉희	”
광주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김용하	”
”	홍기만	”
광주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중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태희	”
”	김용민	”
”	성원제	”
”	이재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규동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성보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선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아	”
”	안승훈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송오섭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여정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흥성지원장	김병식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문봉길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이호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선미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진현민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	공도일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	박영주	”
”	조진구	”
대구고등법원 판사	송민화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배동한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진웅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박선영	”
”	이재욱	”
”	최현중	”
”	홍승구	”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수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김승주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	위광하	”
”	최항석	”
”	황의동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진환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정충령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현식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사법연수원 교수	박광서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허양운	”
서울고등법원 판사	차지원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진	특허법원 판사에 포함

#### 다.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진아	사법연수원 교수에 포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정곤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허경무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부장판사)	박찬석	사법연수원 교수에 포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치훈	사법연수원 교수에 포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심승우	사법연수원 교수에 포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판사	류준구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윤희	”

#### 라.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부장판사	이중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포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환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부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지귀연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완형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나진이	”
대구고등법원 판사	어재원	”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봉민	”
”	하종민	”
특허법원 판사	김기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경은	”
”	박가현	”
”	허익수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권원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춘화	”
”	배윤경	”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학승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현락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권창환	”
”	김현곤	”
”	심홍걸	”
”	임재남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이경	”
”	김호용	”
”	민병국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은경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문수	”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인덕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은경	”
”	박성구	”
”	전아람	”
”	정선균	”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홍섭	”

#### 마. 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재환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	-----	------------------------------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경옥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임 솔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진영현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경희	"
"	박철홍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이승훈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권노을	"
대구지방법원 판사	사공민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	정신구	"
창원지방법원 판사	조미화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김윤석	"
광주지방법원 판사	황성욱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도우람	"
전주지방법원 판사	장인혜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박형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기춘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연경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양성욱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장윤식	”
”	전용수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세용	”
”	정진화	”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현정	”
대구고등법원 판사	구성진	특허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은희	”

#### 바. 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4. 7.까지, 2020. 4. 8.부터 2020. 8. 23.까지 각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사법연수원 교수	정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특허법원 판사	이진희	”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상인	”

서울가정법원 판사	오지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윤미림	”
”	최석진	”
”	최선상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준혁	”
”	박현경	”
”	유지현	”
”	이누리	”
”	장동민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세현	”
”	김영아	”
”	김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휴직을 명함
”	김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박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송명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
”	박예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송유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신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	이경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휴직을 명함
”	정현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영옥	”
”	명선아	”
”	박현숙	”
”	서정희	”
”	신지은	”
”	최지경	”
”	하효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고소영	”
”	곽동훈	”
”	권소영	”
”	김범준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신윤주	”
”	이창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미선	”
”	백광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찬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신세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양우석	”
”	오승이	”
”	원도연	”
”	윤양지	”
”	이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한지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인천가정법원 판사	허정인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승연	"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권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박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	박성민 (朴星玟)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박성민 (朴盛敏)	"
"	배다현	"
"	백상빈	"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부단장)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유동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부단장 겸임을 면함.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이창원	"
"	장영채	"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정종건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미경	”
”	방혜미	”
”	이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부터 2021. 2. 23.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공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구현정	”
”	김원목	”
”	윤중렬	”
”	장민경	”
”	차승우	”
”	최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종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김희진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	권경원	”
”	김미호	”
”	김택성	”
”	정성균	”
”	조아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윤현규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여태곤	”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강효원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최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	홍석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장서진	”
”	최형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병주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포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고준홍	”
”	김종신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안금선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포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연주	”
”	김재경	”
”	임윤한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승운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 송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남진	”
”	정현기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승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민한기	서울회생법원 판사에 포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동진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성인	”
”	이정우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조형목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박소연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장민석	”
”	한옥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상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김현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박소연	”
”	박창희	”
”	손정연	”
”	송현정	”
”	이유영	”
”	이종훈	”
”	이진희	”
”	천지성	”
서울행정법원 판사	방진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희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최승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수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서지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원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함
”	주진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추성엽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남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부터 2021. 2. 23.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임동한	”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재성	”
인천가정법원 판사	허미숙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기간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신동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상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신봄메	”
”	윤정운	”
”	이진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윤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홍주현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병훈	”
”	하석찬	”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 민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기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金志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박태수	”
”	정금영	”
서울회생법원 판사	전성준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경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병휘	”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이영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홍은숙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하림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김태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진영	”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근규	”
”	이재욱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
”	김용균	”
”	조상은	”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한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7. 31.까지 휴직을 명함
”	황운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조유진	”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성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포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도영오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권기백	”
”	박민우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손운경	”
대전지방법원 판사	조영민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안경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동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유빈	”
특허법원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송영복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31.까지 휴직을 명함
”	김태환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심용비	”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주혜	”
”	김지희	”
”	김진원	”
”	윤소희	”
”	이강은	”
”	장기석	”
”	하진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현선혜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범진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김혜인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3.까지 휴직을 명함
”	백규재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이슬	”
”	박신영	”
광주지방법원 판사	손화정	”
”	오한승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정현설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주완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유동균	”
”	최정윤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12. 30.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성준규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장현석	인천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이은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조종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포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혜정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하성우	”
부산지방법원 판사	오승희	”
창원지방법원 판사	홍수진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성경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0.까지 휴직을 명함
”	설승원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손 철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포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수환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양시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보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을 면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강창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김재학	”
”	김정환	”
”	박지은	”
”	서경민	”
”	윤성진	”
”	최현정	”
”	함현지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 민	”
”	박혜란	”
청주지방법원 판사	염혜수	”
”	전호재	”
대구지방법원 판사	곽용현	”
”	김옥희	”
”	신미진	”
”	이지연	”
”	이혜량	”
부산지방법원 판사	구창규	”
”	김민지	”
”	김유성	”

부산지방법원 판사	조형우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노용준	"
울산지방법원 판사 (울산가정법원 판사)	김동석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송명철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상준	"
"	서전교	"
광주가정법원 판사	신아름	"
전주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창민	수원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성진	"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희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3. 2.부터 2020. 7. 31.까지 휴직을 명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화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방일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포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재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용수	”
”	박상한	”
”	이인호	”
”	임세준	”
”	한승진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이현석	”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종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에 포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양진호	”
”	유지상	”
광주지방법원 판사	최파라	”
”	황경환	”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은경	”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포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조민혁	”
대구지방법원 판사	양민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포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정재용	”
”	현정현	”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오형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포함. 광주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소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포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혜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유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유재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	허문희	”

대전지방법원 판사	정우성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길호	”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정진	”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준범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공민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에 포함
”	이지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3. 9.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	정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에 포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강지성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에 포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신동준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심학식	”
”	이혜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엽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동욱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심우성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
춘천지방법원 판사	정아영	”
대전가정법원 판사	권세진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황지영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김가영	”
”	김혜령	”
”	박효송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기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근홍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에 포함
”	박진욱	”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상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포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재필	”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오상혁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지웅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이호동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5. 22.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새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에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권은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승욱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에 포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나원식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	이정목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원재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기용	”
춘천지방법원 판사	류영재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권형관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박노을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김남균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가연	”
창원지방법원 판사	홍은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경	대구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대구가정법원 판사	함병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준영 (金俊英)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에 포함
”	이승엽	”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정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형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청운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포함
”	최유빈	”
”	최동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에 포함
”	강현준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이상언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선희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정순열	”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민령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웅재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목명균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강성영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유신	”
”	이호연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포함
”	추경준	”

인천지방법원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포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정승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정제민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현정	울산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안좌진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정희	"
"	정기종	"
서울회생법원 판사	윤성식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영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김초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양철순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규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에 포함
"	구준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3. 2.부터 2021. 2. 26.까지 휴직을 명함
"	박이랑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포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신성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류봉근	”
”	윤봉학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준영 (金俊永)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주성	”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명화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윤지수	”
”	홍연경	”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에 포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달하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장선종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한상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동욱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우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재인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주현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기희광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강동극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인민	”
전주지방법원 판사	허윤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종웅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동훈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2020. 2. 24.자)

## 2. 지 정

###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구민경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	-----	--

###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	-----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미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이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황성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7. 28.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윤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	박수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봉지수	”
”	이연진	”

## 3.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창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최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형석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김도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유희선	2020. 3. 2.부터 2021. 3. 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심영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	-----	---

##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국식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1. 31.까지 휴직을 명함
”	박현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영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6. 1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신유리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손혜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1.까지 휴직을 명함
”	안은진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최유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2.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수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장유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경목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희승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	허서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6.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가정법원 판사	박은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1.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수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3. 22.부터 2021. 3. 1.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최지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민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가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3. 31.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가정법원 판사	지현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0.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고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안은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8. 16.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나상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3. 2.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한중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연	2020. 2. 25.부터 2020. 7. 2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서우	2020. 2. 25.부터 2021. 2. 2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오주영	2020. 2. 29.부터 2020. 5. 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우제천	2020. 2. 29.부터 2020. 9. 3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화연	2020. 2. 26.부터 2021. 2. 26.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4. 복 직

#####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장진영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	---

**(2020. 3. 7.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3. 7.부터  
2020. 7. 23.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순교

복직을 명함.

14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3. 1.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훈재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포함**(2020. 2. 25.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5.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신용무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에 포함**(2020. 2. 29.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승훈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에 포함**(2020. 2. 24.자)**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진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5.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정환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은정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	방태경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류호중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 나. 고등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여경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	-----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도정원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윤동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오현석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3. 1.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3. 1.부터  
2021. 1. 29.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혜원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나경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5.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5.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

김선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현경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5.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5.부터

2020. 6. 2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진희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5.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5.부터

2022. 2. 24.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	오선아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	정서현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정지은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9. 6.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임태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최민혜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인천가정법원 판사	조세진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인천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안희경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송진호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고지은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청주지방법원 판사	곽여산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부산지방법원 판사	사경화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범용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5.자)
광주지방법원 판사	차기현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지성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이유경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포함 (2020. 3. 1.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오현순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 5. 겸임 및 겸임해임

###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유아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정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윤경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찬영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박노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겸임을 면함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겸임을 면함
------------------------------	-----	----------------------

**다. 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	-----	--

## 라.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이인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유철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은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강영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민형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지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박동복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2020. 2. 24.자)

## 6. 파견 및 파견기간 연장

##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재원	2020. 2. 24.부터 2021. 2. 23.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경수	2020. 2. 24.부터 2021. 2. 23.까지 국회 파견근무를 명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베트남 법원연수원)	박현수	2020. 2. 20.부터 2020. 2. 23.까지 베트남 법원연수원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외교부)	모성준	2020. 2. 23.부터 2020. 2. 23.까지 외교부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현주	2020. 2. 24.부터 2021. 2. 23.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진하	2020. 2. 24.부터 2021. 2. 23.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혜란	2020. 2. 25.부터 2021. 2. 24.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원호	”
수원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류희상	”
”	박병규	”

## 7. 복 귀

###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조중래	복귀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베트남 법원연수원)	박현수	복귀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장윤미	복귀를 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모성준 복귀를 명함  
(외교부)

#### 나.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금진 복귀를 명함.  
(헌법재판소)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포함

####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혁준 복귀를 명함  
(국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준섭 ”  
(헌법재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희진 ”  
(헌법재판소)

(2020. 2. 24.자)

### 8. 사법연구

####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선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수영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평수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무영 ”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2020. 2. 24.부터 2020. 8.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태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최영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김주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정하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유나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경원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문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의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진성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	이수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주일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고철만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문지용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신성욱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강지성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택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최민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구천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고범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김새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황형주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성기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정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최동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예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박민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영양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지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동희	광주지방법원 곡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박주영 (朴珠瑛)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나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박상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강지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동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편병호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안영화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하정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허윤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2. 지명해제

##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화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철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병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김도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김순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관근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나.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경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최승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창원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염경호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임성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고상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조민혁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정아영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유재영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허문희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김아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화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양성욱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진영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고대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방일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 민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송영복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김용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이호동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권형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김남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예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박민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양백성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영양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차동경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신성훈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강성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애란	광주지방법원 곡성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윤희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권노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유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정현설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혜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박형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허윤범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강산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이배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0. 2. 24.자) 끝.

인사발령 법 제35호

2020. 2. 1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포함 (2020. 2. 12.~2021. 2. 11.). 끝.

인사발령 법 제36호

2020. 2. 1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발령취소			
가. 인사발령 법 제32호 중 2. 지정란의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황성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0. 7. 28.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 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끝.			

## 인사발령 법 제37호

2020. 2. 1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이영욱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 2. 24.자) 끝.

## 인사발령 법 제38호

2020. 2. 1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이민걸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2. 겸 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신광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2020. 3. 1.자) 끝.

## 인사발령 법 제39호

2020. 2. 1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연장)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이태중	2020. 3. 1.부터 2020. 8. 31.까지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함. 끝.

인사발령 법 제40호

2020. 2. 18.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보 임			
가. 지방법원 판사			
		김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박수진	”
		백현민	”
		선승혜	”
		송승훈	”
		신예슬	”
		이영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최정원	”
		김부성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정세영	”
		류의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조진용	”
		김서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공병훈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김규현	”
		김혜림	”
		신은진	”

최희동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양소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포함
최태진	”
강민균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구세희	”
박정미	”
변이섭	”
신정수	”
우희성	”
김도형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동민	”
신유리	”
윤혜원	”
이은경	”
전지은	”
박애경	수원지방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포함
성재준	”
이종찬	수원지방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포함
이지영	”

김용석	수원지방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포함
신창용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차영욱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에 포함
김수한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문지연	”
김한울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포함
김환권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조수민	”
김미란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김민지	”
김은혜	”
김정섭	”
주우현	”
홍승희	”
황윤철	”
조재혁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에 포함
박승휘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신승아	”

안혜미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여한울	”
위은숙	”
유주현	”
한혜진	”
이윤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포함
이은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포함
정의철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한운영	”
구분용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윤 정	”
이학근	”
조유리	”
최지원	”
정수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에 포함
김상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에 포함
김민석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유현주	”
이제승	”
임영실	”

차유나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신호승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에 포함
곽지영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박정련	”
이국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포함
정양순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3.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1호

2020. 2.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상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2020. 2. 24.자)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경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	--

(2020. 3.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2호

2020. 2. 2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b>1. 발령변경</b>			
가.	인사발령 법 제33호 중 1. 지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란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김주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김지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나.	인사발령 법 제33호 중 1. 지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란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봉조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다.	인사발령 법 제33호 중 1. 지명	나. 지방법원 판사란의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주일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춘천지방법원 판사 정종인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라.	인사발령 법 제33호 중 1. 지명	나. 지방법원 판사란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신성욱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란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강수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마.	인사발령 법 제33호 중 1. 지명	나. 지방법원 판사란의 “창원지방법원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판사 유정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바.	인사발령 법 제33호 중 1. 지명	나. 지방법원 판사란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동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란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끝.	

인사발령 법 제43호

2020. 2. 2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b>1. 지정기간 연장</b>			
<b>가. 지방법원 판사</b>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	2020. 2.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함
<b>2. 휴 직</b>			
<b>가. 지방법원 부장판사</b>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휴직을 명함
<b>나. 지방법원 판사</b>			
	인천지방법원 판사	오범석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범용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5.부터 2021. 2. 24.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44호

2020. 2. 2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b>1. 겸 임</b>			
<b>가. 지방법원 부장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풍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겸임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김수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안효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	-----	--------------------------

#### 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건희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겸임함
------------------------------	-----	----------------

”	이재찬	”
---	-----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기춘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겸임함
------------------------------	-----	----------------

”	박형렬	”
---	-----	---

#### 다.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일수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	-----	----------------------------------

”	이민호	”
---	-----	---

대전가정법원 판사	정현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에 겸임함
-----------	-----	-------------------------------

부산지방법원 판사	사경화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겸임함
-----------	-----	----------------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	-----	----------------------------------

”	이장욱	”
---	-----	---

## 2. 겸임해임

####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김동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	-----	--------------------------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 성

부산고등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20. 2. 24.자) 끝.

인사발령 법 제48호

2020. 2. 26.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b>1. 지명</b>			
<b>가. 지방법원 부장판사</b>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재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이재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전재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b>2. 지명해제</b>			
<b>가. 지방법원 부장판사</b>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정영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b>나. 지방법원 판사</b>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승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0. 2. 27.자) 끝.

## 공지사항

### ◎ 2월 신착 법률도서·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에 2월분 법률도서·일반도서(367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 (98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 법률도서

#####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Law & technology v.2018-2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2	Law & technology v.2019-1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3	경기법조 v.26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변호사회	2019
4	高麗法學 v.95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5	考試界 v.2019-3 / 국가고시학회	국가고시학회	2019
6	考試界 v.2018-4 / 국가고시학회	국가고시학회	2018
7	考試界 v.2018-5 / 국가고시학회	국가고시학회	2018
8	考試界 v.2019-1 / 국가고시학회	국가고시학회	2019
9	考試界 v.2019-2 / 국가고시학회	국가고시학회	2019
10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33-1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8
11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33-2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8
12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33-3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8
13	東亞法學 v.85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東亞大學校 出版部	2019
14	법경제학연구 v.16-3 /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5	법과 기업연구 v.9-3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6	법과 社會 v.62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19
17	法과 政策 v.25-3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濟州大學校	2019
18	법령해석사례집, 2019(상)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9
19	法律新聞 v.2018-3 /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8
20	法律新聞 v.2018-4 /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8
21	法律新聞 v.2019-1 /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9
22	法律新聞 v.2019-2 /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9
23	法律新聞 v.2019-3 /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9
24	법제소식 v.2018-2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8
25	법제소식 v.2019-1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9
26	法曹 v.2018-4 / 법조협회	法曹協會	2018
27	法曹 v.2018-5 / 법조협회	法曹協會	2018
28	法曹 v.2018-6 / 법조협회	法曹協會	2018
29	法曹 v.2019-6 / 법조협회	法曹協會	2019
30	法學 v.60-4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31	法學論攷 v.68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0
32	法學論叢 v.26-3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 法學研究所	2019
33	法學論叢 v.36-4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9
34	法學研究 v.22-4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35	法學研究 v.29-4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36	法學研究 v.30-2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2019
37	辯護士 v.52 / 서울地方辯護士會	서울地方辯護士會	2020
38	司法行政 v.2018-3 / 한국사법행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8
39	司法行政 v.2019-1 / 한국사법행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0	司法行政 v.2019-2 / 한국사법행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41	서울法學 v.27-3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2019
42	成均館法學 v.31-4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法學研究院	2019
43	(旬刊)法制 v.2018 / 한국, 법제처	法制處	2018
44	알기 쉬운 법령 핵심 요약서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9
45	외법논집 v.43-4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9
46	圓光法學 v.35-4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47	人權과 正義 v.2018-2 / 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護士協會	2018
48	人權과 正義 v.2019-1 / 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護士協會	2019
49	裁判과 判例 v.28 / 대구판례연구회	大邱判例研究會	2019
50	재판자료, 제139집: 행정재판실무연구 VI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20
51	저스티스 v.176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20
52	최신외국법제정보 v.2018-1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8
53	최신외국법제정보 v.2018-2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8
54	최신외국법제정보 v.2019-1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9
55	통합 법제연구 보고서, 2019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9
56	衡平과 正義 v.34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2019
57	홍익법학 v.20-4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弘益大學校	2019
58	ケース研究 v.2018 / 家庭事件研究會	家庭事件研究會	2018
59	ジュリスト v.2018-2 / 有斐閣	有斐閣	2018
60	ジュリスト v.2018-3 / 有斐閣	有斐閣	2018
61	ジュリスト v.2019-1 / 有斐閣	有斐閣	2019
62	ジュリスト v.2019-2 / 有斐閣	有斐閣	2019
63	國家學會雜誌 v.131-1 / 東京大學 法學部 研究室, 國家學會	東京大學國家學會	2018
64	國家學會雜誌 v.131-2 / 東京大學 法學部 研究室, 國家學會	東京大學國家學會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65	國家學會雜誌 v.132-1 / 東京大學 法學部 研究室, 國家學會	東京大學國家學會	2019
66	民商法雜誌 v.154-1 / 末川博 有斐閣	有斐閣	2018
67	民商法雜誌 v.154-2 / 末川博 有斐閣	有斐閣	2019
68	法律のひろば v.2018-2 / ぎょうせい	ぎょうせい	2018
69	法律のひろば v.2019-1 / ぎょうせい	ぎょうせい	2019
70	法律時報 v.2018-2 / 末弘嚴太郎	日本評論社	2018
71	法律時報 v.2018-3 / 末弘嚴太郎	日本評論社	2018
72	法律時報 v.2019-1 / 末弘嚴太郎	日本評論社	2019
73	法律時報 v.2019-2 / 末弘嚴太郎	日本評論社	2019
74	法律判例文獻情報 v.2018-1 / 法律判例文獻情報研究會	第一法規	2018
75	法律判例文獻情報 v.2018-2 / 法律判例文獻情報研究會	第一法規	2018
76	法曹 v.2018-2 / 法曹會	法曹會	2018
77	法曹 v.2019-1 / 法曹會	法曹會	2019
78	法曹時報 v.70-3 / 法曹會	法曹會	2018
79	法曹時報 v.70-4 / 法曹會	法曹會	2018
80	法曹時報 v.71-1 / 法曹會	法曹會	2019
81	法曹時報 v.71-2 / 法曹會	法曹會	2019
82	法學 v.82 / 東北帝國大學法學會	東北帝國大學法學會	2018
83	法學七ミナ- v.2018-2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8
84	法學七ミナ- v.2018-3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8
85	法學七ミナ- v.2019-1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9
86	法學七ミナ- v.2019-2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9
87	法學教室 v.2018-2 / 有斐閣	有斐閣	2018
88	法學教室 v.2018-3 / 有斐閣	有斐閣	2018
89	法學教室 v.2019-1 / 有斐閣	有斐閣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90	法學教室 v.2019-2 / 有斐閣	有斐閣	2019
91	法學論叢 v.183 / 京都大學法學會	有斐閣	2019
92	法學研究 v.2018-2 /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2018
93	法學研究 v.2018-3 /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2018
94	法學研究 v.2019-1 /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2019
95	法學志林 v.116 / 法政大學法學法學志林	法政大學	2019
96	法學協會雜誌 v.135-3 / 東京大學法學協會	東京大學法學協會	2018
97	法學協會雜誌 v.135-4 / 東京大學法學協會	東京大學法學協會	2018
98	法學協會雜誌 v.136-1 / 東京大學法學協會	東京大學法學協會	2019
99	法學協會雜誌 v.136-2 / 東京大學法學協會	東京大學法學協會	2019
100	熊本法學 v.142-144 / 熊本大學法學會	熊本大學法學會	2018
101	日本法醫學雜誌 v.2018 / 日本法醫學會	日本法醫學會	2018
102	自由と正義 v.69-2 / 日本弁護士連合會	日本弁護士連合會	2018
103	自由と正義 v.69-3 / 日本弁護士連合會	日本弁護士連合會	2018
104	阪大法學 v.67-2 / 大阪大學法學會	大阪大學法學會	2018
105	阪大法學 v.68-1 / 大阪大學法學會	大阪大學法學會	2018
106	阪大法學 v.68-2 / 大阪大學法學會	大阪大學法學會	2019
107	判例タイムズ v.69-3 / 判例タイムズ社	判例タイムズ社	2018
108	判例タイムズ v.69-4 / 判例タイムズ社	判例タイムズ社	2018
109	判例タイムズ v.70-1 / 判例タイムズ社	判例タイムズ社	2019
110	判例タイムズ v.70-2 / 判例タイムズ社	判例タイムズ社	2019
111	判例時報 v.2018-7 / 判例時報刊行會	判例時報社	2018
112	判例時報 v.2018-8 / 判例時報刊行會	判例時報社	2018
113	判例時報 v.2018-9 / 判例時報刊行會	判例時報社	2018
114	判例時報 v.2018-10 / 判例時報刊行會	判例時報社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15	判例時報 v.2018-11 / 判例時報刊行會	判例時報社	2018
116	判例時報 v.2018-12 / 判例時報刊行會	判例時報社	2018
117	判例時報 v.2019-1 / 判例時報刊行會	判例時報社	2019
118	判例時報 v.2019-2 / 判例時報刊行會	判例時報社	2019
119	判例時報 v.2019-3 / 判例時報刊行會	判例時報社	2019
120	判例時報 v.2019-4 / 判例時報刊行會	判例時報社	2019
121	判例時報 v.2019-5 / 判例時報刊行會	判例時報社	2019
122	判例時報 v.2019-6 / 判例時報刊行會	判例時報社	2019
123	判例時報 v.2019-7 / 判例時報刊行會	判例時報社	2019
124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SP v.105-4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9
125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v.9-2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9
126	Kritische Justiz: KJ v.52-4 / Buckel, Sonja	Nomos	2019
127	Michigan law review v.118-2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9
128	(The) cambridge law journal v.78-3 /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129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19-4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Institute for Court Management Talarico, Susette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19
130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8(I)-5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19

##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31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Law and politics in Africa   Asia   Latin America v.52-3 / Krüger, Herbert, Kunig, Philip, Marauhn, Thilo, Daunn, Philipp, Hernekamp, Karl-Andreas, Hamburger Gesellschaft für Völkerrecht und Auswärtige Politik	Nomos	2019

##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32	BFL v.2019-1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9
133	BFL v.2018-2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8
134	경쟁저널 v.2018 / 한국공정거래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8
135	(季刊)著作權 v.128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136	(季刊)著作權 v.2018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137	과학기술과 법 v.10-2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38	國稅 v.2018-2 / 국세청, 세우회	國稅廳 稅友會	2018
139	國稅 v.2019-1 / 국세청, 세우회	國稅廳 稅友會	2019
140	기업법연구 v.33-4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9
141	勞動法研究 v.47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9
142	勞動法學 v.72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勞動法學會	2019
143	노동정책연구 v.2019-4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9
144	稅務士 v.2018 / 한국세무사회	韓國稅務士會	2018
145	(속보)삼일총서 v.2018-2 / 삼일인포마인	삼일인포마인	2018
146	(속보)삼일총서 v.2018-3 / 삼일인포마인	삼일인포마인	2018
147	(속보)삼일총서 v.2018-4 / 삼일인포마인	삼일인포마인	2018
148	(속보)삼일총서 v.2019-1 / 삼일인포마인	삼일인포마인	2019
149	(속보)삼일총서 v.2019-2 / 삼일인포마인	삼일인포마인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50	(속보)삼일총서 v.2019-3 / 삼일인포마인	삼일인포마인	2019
151	언론과 법 v.18-3 /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9
152	言論仲裁 v.2018 / 언론중재위원회	言論仲裁委員會	2018
153	(월간)노동리뷰 v.2018-2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8
154	(월간)노동리뷰 v.2018-3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8
155	(월간)노동리뷰 v.2019-1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9
156	(월간)노동리뷰 v.2019-2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9
157	(月刊) 勞動法律 v.2018-3 / 중앙경제사	중앙경제사	2018
158	(月刊) 勞動法律 v.2019-1 / 중앙경제사	중앙경제사	2019
159	(月刊) 勞動法律 v.2019-2 / 중앙경제사	중앙경제사	2019
160	의료법학 v.20-3 /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2019
161	저작권문화 v.2018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18
162	정보법학 v.23-3 /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2019
163	조세 v.2018-3 / 조세통람사	租稅通覽社	2018
164	조세 v.2018-4 / 조세통람사	租稅通覽社	2018
165	조세 v.2019-1 / 조세통람사	租稅通覽社	2019
166	조세 v.2019-2 / 조세통람사	租稅通覽社	2019
167	조세연구 v.19-4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9
168	租稅學術論集 v.35-4 / 한국국제재정협회	韓國國際租稅協會	2019
169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 및 시사점 / 차경엽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170	증권법연구 v.20-3 / 한국증권법학회	三宇社	2019
171	지식과 권리 v.2019 /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	2019
172	지식재산연구 v.14-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173	지식재산정책 v.2018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174	土地法學 v.35-2 / 한국토지법학회	韓國土地法學會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75	コピーライト v.2018-2 / 著作権情報センター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18
176	コピーライト v.2019-1 / 著作権情報センター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19
177	パテント v.2018-2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8
178	パテント v.2018-3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8
179	パテント v.2019-1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9
180	パテント v.2019-2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9
181	(季刊)労働法 v.2018 / 総合労働研究所	総合労働研究所	2018
182	金融法務事情 v.2018-2 / 金融財政事情研究会	金融財政事情研究所	2018
183	金融法務事情 v.2018-3 / 金融財政事情研究会	金融財政事情研究所	2018
184	金融法務事情 v.2018-4 / 金融財政事情研究会	金融財政事情研究所	2018
185	金融法務事情 v.2019-1 / 金融財政事情研究会	金融財政事情研究所	2019
186	金融法務事情 v.2019-2 / 金融財政事情研究会	金融財政事情研究所	2019
187	労働法律旬報 v.2018-2 / 労働旬報社	労働旬報社	2018
188	労働法律旬報 v.2018-3 / 労働旬報社	労働旬報社	2018
189	労働法律旬報 v.2019-1 / 労働旬報社	労働旬報社	2019
190	労働法律旬報 v.2019-2 / 労働旬報社	労働旬報社	2019
191	労働判例 v.2018-3 / 産業労働調査所	産業労働調査所	2018
192	労働判例 v.2018-4 / 産業労働調査所	産業労働調査所	2018
193	労働判例 v.2019-1 / 産業労働調査所	産業労働調査所	2019
194	労働判例 v.2019-2 / 産業労働調査所	産業労働調査所	2019
195	發明 v.2018-2 / 發明協會	發明協會	2018
196	發明 v.2019-1 / 發明協會	發明協會	2019
197	租稅研究 v.2019-12 / 日本租稅研究協	日本租稅研究協會	2019
198	知財管理 v.2018-2 / 日本知的財産協會	日本知的財産協會	2018
199	知財管理 v.2018-3 / 日本知的財産協會	日本知的財産協會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00	現代消費者法 v.38-41 /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8
201	Antitrust analysis of platform markets: why the Supreme Court got it right in American Express / Evans, David S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2019
202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31-3 /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203	(The) antitrust paradigm: restoring a competitive economy / Baker, Jonathan B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04	國際去來法硏究 v.28-2 / 국제거래법학회	國際去來法學會	2019
205	국제노동브리프 v.2018-3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8
206	국제노동브리프 v.2018-4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8
207	국제노동브리프 v.2019-1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9
208	국제법 동향과 실무 v.55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9
209	國際私法硏究 v.25-2 / 한국국제사법학회	법영사	2019
210	人道法論叢 v.39 / 대한적십자사, 인권법연구소	大韓赤十字社	2019
211	중재연구 v.29-4 /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	2019
212	通商法律 v.2018-2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8
213	國際法外交雜誌 v.117 / 國際法學會	有斐閣	2018
214	國際商事法務 v.46-2 / 國際商事法務硏究所	國際商事法務硏究所	2018
215	國際商事法務 v.46-3 / 國際商事法務硏究所	國際商事法務硏究所	2018
216	國際商事法務 v.47-1 / 國際商事法務硏究所	國際商事法務硏究所	2019
217	European law review v.2019-6 / Arnull, Anthony, White, Robin C,A	Sweet & Maxwell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18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94 de la collection: 2017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9
219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19-3 / Lagarde, Paul, Dalloz	Dalloz	2019
220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9-3 / Desurmont, Thierry, Gsubisc, Yves, Kerever, Andre, Henry Lemoine	Henry Lemoine	2019
221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v.2019-4 / Jacqué, Jean-Paul, Prieto, Catherine, Sibony, Anne-Lise, Dalloz Sirey	Dalloz	2019
222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79-4 / Bruns, Viktor, Bernhardt, Rudolf	W. Kohlhammer	2019

##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23	公法研究 v.48-2 /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9
224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2019
225	世界憲法研究 v.25-3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世界憲法學會 韓國學會	2019
226	(月刊)憲政 v.2018-4 / 대한민국헌정회	大韓民國憲政會	2018
227	(月刊)憲政 v.2019-1 / 대한민국헌정회	大韓民國憲政會	2019
228	(月刊)憲政 v.2019-2 / 대한민국헌정회	大韓民國憲政會	2019
229	인권 v.2018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8
230	헌법재판소공보 v.2019-1 / 한국,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사무처	2019
231	헌법재판소공보 v.2018-2 / 한국,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사무처	2018
232	헌법재판연구 v.6-2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2019
233	憲法學研究 v.25-4 /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34	憲法判例百選, I / 有斐閣	有斐閣	2019
235	憲法判例百選, II / 有斐閣	有斐閣	2019
236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v.144-2 / J.C.B.Mohr	J.C.B.Mohr	2019
237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120 / Puf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uf	2019
238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2019-4 / C.F.Müller	C.F.Müller	2019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39	경찰학연구 v.60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9
240	地方自治法研究 v.64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9
241	행정소송사례집 v.40 / 한국. 법무부	法務部訟務課	2019
242	自治研究 v.2018-2 / 良書普及會	良書普及會	2018
243	自治研究 v.2018-3 / 良書普及會	良書普及會	2018
244	自治研究 v.2019-1 / 良書普及會	良書普及會	2019
245	自治研究 v.2019-2 / 良書普及會	良書普及會	2019
246	判例地方自治 v.2018-3 / 地方自治判例研究會	ぎょうせい	2018
247	判例地方自治 v.2018-4 / 地方自治判例研究會	ぎょうせい	2018
248	判例地方自治 v.2019-1 / 地方自治判例研究會	ぎょうせい	2019
249	判例地方自治 v.2019-2 / 地方自治判例研究會	ぎょうせい	2019
250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itique en France et Àl'Étranger v.2019-5 / L.G.D.J	L.G.D.J	2019
251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itique en France et Àl'Étranger v.2019-6 / L.G.D.J	L.G.D.J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52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9-6 / Dalloz	Dalloz	2019

##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53	矯正研究 v.85 / 한국교정학회	韓國矯正學會	2019
254	被害者學研究 v.27-3 / 한국피해자학회	韓國被害者學會	2019
255	刑事法研究 v.81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19
256	형사정책연구소식 v.201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257	犯罪學雜誌 v.84 / 日本犯罪學會	日本犯罪學會	2018
258	罪と罰 v.2017-2018 / 日本刑事政策研究會	日本刑事政策研究會	2017
259	刑法雜誌 v.56 / 日本刑法學會	日本刑法學會	2017
260	刑法雜誌 v.57 / 日本刑法學會	日本刑法學會	2018
261	刑事法ジャーナル v.2018 / 成文堂	成文堂	2018
262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énal Comparé v.2019-3 / Dalloz Centre français de droit comparé droit comparé de Paris Centre de droit Pénal comparé Institut de droit comparé Institut de criminologie	Dalloz	2019

##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63	선진상사법률연구 v.2018-2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8
264	선진상사법률연구 v.2019-1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9
265	損害保險 v.2018-2 / 대한손해보험협회	大韓損害保險協會	2018
266	損害保險 v.2018-3 / 대한손해보험협회	大韓損害保險協會	2018
267	損害保險 v.2019-1 / 대한손해보험협회	大韓損害保險協會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68	損害保險 v.2019-2 / 대한손해보험협회	大韓損害保險協會	2019
269	海事法研究 v.31-3 / 한국해사법학회	韓國海事法學會	2019
270	海洋韓國 v.2018-3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18
271	N.B.L. v.2018-3 / 商事法務研究會	商事法務研究會	2018
272	N.B.L. v.2018-4 / 商事法務研究會	商事法務研究會	2018
273	N.B.L. v.2019-1 / 商事法務研究會	商事法務研究會	2019
274	N.B.L. v.2019-2 / 商事法務研究會	商事法務研究會	2019
275	(코드に対応した)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報告書の記載事例の分析: 2019年版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9
276	金融、商事判例 v.2019-1 / 經濟法令研究會	經濟法令研究會	2019
277	金融、商事判例 v.2018-3 / 經濟法令研究會	經濟法令研究會	2018
278	金融、商事判例 v.2018-4 / 經濟法令研究會	經濟法令研究會	2018
279	金融、商事判例 v.2019-2 / 經濟法令研究會	經濟法令研究會	2019
280	金融、商事判例 v.2019-3 / 經濟法令研究會	經濟法令研究會	2019
281	損害保險研究 v.80 /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2018
282	(旬刊) 商事法務 v.2018-3 / 商事法務研究會	商事法務研究會	2018
283	(旬刊) 商事法務 v.2018-4 / 商事法務研究會	商事法務研究會	2018
284	(旬刊) 商事法務 v.2019-1 / 商事法務研究會	商事法務研究會	2019
285	(旬刊) 商事法務 v.2019-2 / 商事法務研究會	商事法務研究會	2019
286	銀行法務21 v.62-2 / 經濟法令研究會	經濟法令研究會	2018
287	銀行法務21 v.63-1 / 經濟法令研究會	經濟法令研究會	2019
288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決算月別/中間決算: 2020年版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9
289	海事法研究會誌 v.2018 / 日本海運集會所	日本海運集會所	2018
29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9-10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9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83-6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9

##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92	(2019)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백서. 1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293	(2019)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백서. 2: 자료집 상권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294	(2019)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백서. 3: 자료집 하권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295	法務士 v.2018-2 / 대한법무사협회	大韓法務士協會	2018
296	法務士 v.2018-3 / 대한법무사협회	大韓法務士協會	2018
297	法務士 v.2019-1 / 대한법무사협회	大韓法務士協會	2019
298	法務士 v.2019-2 / 대한법무사협회	大韓法務士協會	2019
299	法院公報 v.2018-3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法院行政處	2018
300	法院公報 v.2019-1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法院行政處	2019
301	法院公報 v.2019-2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法院行政處	2019
302	법원사람들 v.2018-1 / 한국. 대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8
303	법원사람들 v.2018-2 / 한국. 대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8
304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 김현범	사법정책연구원	2019
305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별책): 중국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 전문 / 김현범	사법정책연구원	2019
306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 1: 퇴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2019
307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 2: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08	裁判所時報 v.2013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3
309	裁判所時報 v.2014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4
310	裁判所時報 v.2015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5
311	裁判所時報 v.2016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6
312	裁判所時報 v.2017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7
313	裁判所時報 v.2018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8
314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7-4 / Sage	Sage	2019
315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v.80-4 /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9
316	司法院公報 v.59-2 / 中國. 司法院秘書處	司法院秘書處	2017
317	司法院公報 v.60-2 / 中國. 司法院秘書處	司法院秘書處	2018
318	司法院公報 v.60-3 / 中國. 司法院秘書處	司法院秘書處	2018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19	법률구조 v.2018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
320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ZZP v.132-2 / Carl Heymanns Verlag	Carl Heymanns Verlag	2019
321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ZZP v.132-4 / Carl Heymanns Verlag	Carl Heymanns Verlag	2019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22	범죄수사학연구 v.5-2 / 경찰대학	경찰대학	2019
323	(季刊)刑事弁護 v.2018-2 / 現代人文社	現代人文社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24	(季刊)刑事弁護 v.2019-1 / 現代人文社	現代人文社	2019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25	동그라미: 광주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동심’ 사례집 / 광주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2019
326	民事法研究 v.27 / 호남민사법연구회	大韓民事法學會	2019
327	登記研究 v.2018-2 / 帝國判例法規 テイハン	テイハン	2018
328	登記研究 v.2018-3 / 帝國判例法規 テイハン	テイハン	2018
329	登記研究 v.2019-1 / 帝國判例法規 テイハン	テイハン	2019
330	登記情報 v.2018-2 / 民事法情報センター	民事法情報センタ	2018
331	登記情報 v.2019-1 / 民事法情報センター	民事法情報センタ	2019
332	戶籍 v.2018-2 / 全國連合戶籍事務協議會	テイハン	2018
333	戶籍 v.2018-3 / 全國連合戶籍事務協議會	テイハン	2018
334	戶籍 v.2019-1 / 全國連合戶籍事務協議會	テイハン	2019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35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v.2018-2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8
33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v.2019-1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9
337	判例公報 v.2018-3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8
338	判例公報 v.2018-4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8
339	判例公報 v.2019-1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9
340	判例公報 v.2019-2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9
341	判例公報 v.2019-3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42	Supreme court decisions vol.15 / Korea, Supreme Court Library	Supreme Court Library	2019

## ■ 일반도서

###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國會圖書館報 v.2018-2 / 국회도서관, 사서국	국회도서관	2018
2	國會圖書館報 v.2019-1 / 국회도서관, 사서국	국회도서관	2019
3	圖書館文化 v.2018 / 한국도서관협회	韓國圖書館協會	2018
4	한국도서관연감 v.2019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2020
5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v.50-4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9

### [철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6	별이 빛나는 밤: 2019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집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19

###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7	UN감사위원회의감사사례분석 / 신호철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8	監査論集 v.33 / 감사원	감사원	2019
9	鑑定評價 v.2018 /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평가업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2018
10	감정평가학 논집 v.18-3 /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9
11	고용노동통계연감 v.2019 / 한국, 고용노동부	노동청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패방지 사례 분석: 주요 국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 김민정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13	國防研究 v.62-4 / 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14	國會報 v.2018-2 / 국회사무처	國會事務處	2018
15	國會報 v.2019-1 / 국회사무처	國會事務處	2019
16	국회입법조사처보 v.2018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2018
17	保險學會誌 v.121 /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20
18	외교 v.2018 / 한국외교협회	한국외교협회	2018
19	젠더리뷰 v.201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20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9-2 /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0
21	韓國公安行政學會報 v.76 / 한국공안행정학회	韓國公安行政學會	2019
22	한국아동복지학 v.60 /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2017
23	한국아동복지학 v.68 /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2019

###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4	인사관리 v.2019-1 / 한국인사관리협회	한국인사관리협회	2019
25	인사관리 v.2019-2 / 한국인사관리협회	한국인사관리협회	2019

### ■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명	발간처	간기
1	LAW & TECHNOLOGY 16권1호(20.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39	(주)리걸타임즈	월간

	서명	발간처	간기
3	경쟁과 법 2019.6.(제12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반년간
4	고시계 756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5	공법연구 48집2호	한국공법학회	계간
6	국제법학회논총 64권 4호	대한국제법학회	부정간
7	노동법률 2020.2.	中央經濟社	월간
8	도산법연구 9권2호(2019.9.)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반년간
9	문학사상 568호	문학사상사	월간
10	법과 사회 6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반년간
11	한국아동복지학 60호	한국아동복지학회	계간
12	사법행정 제61권 제2호(710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3	사회보장법학 2019년 제8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계간
14	산업재산권 62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연3회
15	속보삼일총서 1555,1556,1557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6	시사저널 1581/1582,1583호	독립신문사	주간
17	신동아 2020. 3.	(주)동아피디에스	월간
18	월간 인사관리 2020.02.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9	월간조선 2020년 3월	조선일보사	월간
20	월간중앙 2020. 3월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21	이코노미스트 1520,1521,1522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22	조세통서 DB 2020.1.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3	종합물가정보 592호 I,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24	주간조선 N2593,2594,2595,2596	조선일보사	주간
25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1권 제2호(2019)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반년간
26	출판저널 V515	(주)출판저널문화미디어	월간
27	피해자학연구 27권3호	한국피해자학회	반년간

	서명	발간처	간기
28	현대문학 2020년 2월	(주)현대문학	월간
29	형사법연구 31권 4호	한국형사법학회	계간

### ■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national law journal 2019.1,2,3,4,5,7,8,9,10,12월	Franz Steiner Verlag	월간
2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144 H2	J.C.B. Mohr	계간
3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Bd244 H5-6	Max Schmidt-Romhild KG	격월간
4	Archiv für Pressrecht J50 H6, 19INDEX	C. H. Beck	격월간
5	Betriebs-Berater (BB) J74 H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6	Bundesgesetzblatt:Part 1 & Part 2 I .Nr47,48,49,50,51,5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7	Computer und Recht 2019 H12,19index/I 6,18-19index	Dr.Otto Schmidt	월간
8	Der Spiegel 2019N52	Spiegel	주간
9	Der Staat Bd58 H4	Duncker & Humblot	계간
10	Deutsches Verwaltungsblatt(DVBL) (Includes: Verwaltungsarchiv) J134 H24	Carl Heymanns	반월간
11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 J64 H24	Otto Schmidt	격주간
12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2 N23	Kohlhammer	반월간
13	Die Praxis 2019 H12,19index	Helbing & Lichtenhahn	월간
14	DISCOVER 2020. 1-2월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서명	발간처	간기
15	Europäische Grundrecht-Zeitschrift J46 H20-21,22-23,24	N.P. Engel	반월간
16	Europarecht J54 H6	Nomos-Verl	격월간
17	European Law Review V44 N6	Sweet & Mawell	격월간
18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30 H2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9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6 H12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월간
20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2019 H12	Stollfuß	월간
21	Human Rights Law Journal Vol 38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22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36 N2,6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23	Journal of World Trade V53 I 2,6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24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41 H9,12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25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9 H10,11	C.H.Beck	월간
26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 2019 N50,51,52	Juris-Classeur	주간
27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 2019 N49,50,51,52	JCP	주간
28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 2019 N49,50,51-52	JCP	주간
29	L'actualitéJuridiqueDroitAdministratif(AJDA) N43,44	Dalloz	주간
30	Lloyd's Law Reports:Insurance& Reinsurance 2019 supple	LLP	연10회
31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2019 supple	LLP	계간

	서명	발간처	간기
32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73 H24,19index	Otto Schmidt	반월간
3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J72 H52,19index	C.H.Beck	주간
34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36 H2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5	Nj Neue Justiz J73 H12	Nomos	월간
36	Pouvoirs N171	le Seuil	계간
37	Recht Der Arbeit J72 H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8	Recht Und Politik; Vierteljahreshefte Fuer Rechts- Und Verw J55 H4	Verlag GmbH	계간
39	Rechtstheorie Bd50 H1	Duncker & Humblot . Berlin	계간
40	Recueil des cours N394	Hague Academy	부정기
41	Recueil Le Dalloz N44,44-sup	Dalloz	주간
4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9 N3	Dalloz	계간
43	Revue du droit public 2019 N5,6	L.G.D.J.	격월간
44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9 N6	Dalloz	격월간
45	Revue Franc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120	PUF	계간
46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2019 N4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계간
47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261	Trimestrielle	계간
48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9 N4	Dalloz	계간
49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2019 N4	Dalloz	계간
50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en 2019 N4	EDITIONS DALLOZ	계간
51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40 N4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계간

	서명	발간처	간기
52	TIME 1.20./1.27.2.3./2.10./2.17.	Time Asia	주간
53	Transportrecht J42 H11-12	Luchterhand	월간
54	U.S.News & World Report 2020 Edition	U.S.News & World Report	연간
55	Verfassung Und Recht In Uebersee J52 H3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und Co. KG	계간
56	Versicherungsrecht J70 H24	Versicherungswirtschaft e. V.	순간
57	Wissenschaftsrecht B51 H3-4	Mohr Siebeck GmbH & Co. KG	계간
58	WM (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Ba) J73 N50-52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59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ZAS) 2019.06.	Manz	격월간
60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J79 H4	Kohlhammer	계간
6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66 H24	Giesecking	반월간
62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J34 H4	C.F. Müller	계간
63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KTS) J80 H4	Carl Heymanns	계간
64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zsr) B138 part1-5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65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ZWeR) J17 H4	RWS Verlag	연5회
66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ZIP) J40 H48,51-52 EWIR24	RWS	주간
67	zfrv(Zeitschrift fü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60 H5,6	Manz	격월간
68	Antitrust Law Journal vol81, N1(2016)	American Bar Association	연3회
69	(The) international lawyer vol49, NO3(2016.winter)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